2020년 귀속

연말정산

AEGIS ENTERPRISE

연말정산안내

- 국세청 (http://www.nts.go.kr)
-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안내(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6645)
-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bTR6gTqHp38)

.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2. 전직장내역등록

2-1. 전직장내역등록 (종전근무지 입력)

2-2. 사업장변경처리 (2020년도 내에 사업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연근로소득내역등록 (2020년 급여현황 등록)

4. 개인공제자료등록

4-1. 부양가족

4-2. 보험료

4-3. 주택자금

4-4. 신용카드등

4-5. 의료비

4-6. 교육비

4-7. 기부금

4-8. 기타

5. 연말정산작업

6. 의료비공제자료등록

7. 기부금공제자료등록

8. 월세액/주택임차등록

9.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10. 연말정산 결과 조회 (연말정산 작업 후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 인쇄)

11. 정산디스켓작업

12. 징수환차/환급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급여에 반영)

1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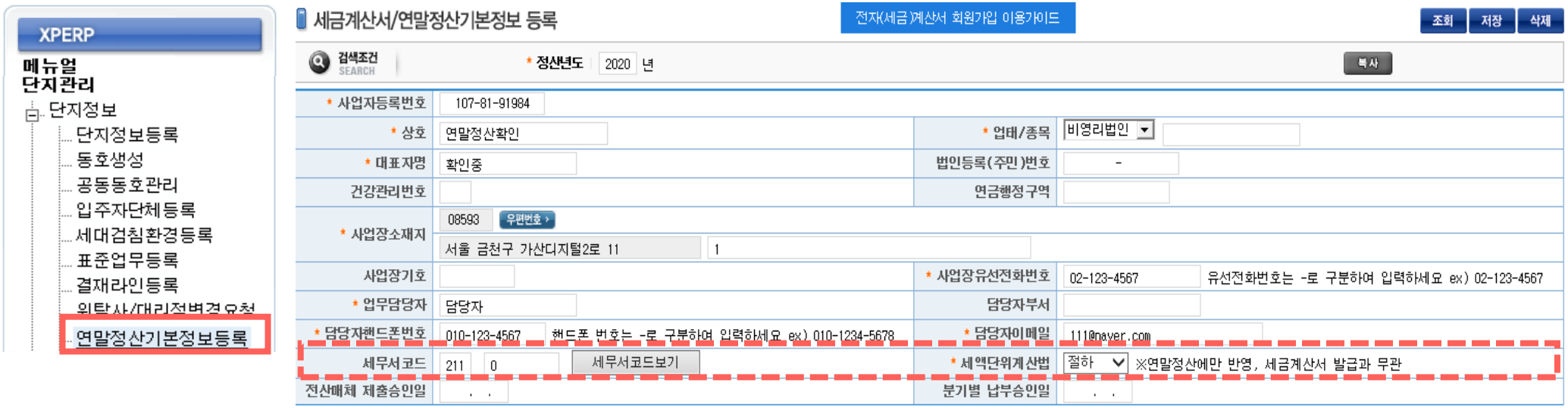

정산년도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해당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메뉴는 급여(원천징수이행신고서,퇴직정산서,연말정산 등)의 신고자 정보에 해당되므로 확인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모든 내용이 전년과 동일 할 경우 복사버튼을 누르면 같은 내용이 복사됩니다.)

※ 연말정산 시 세무서코드와 세액단위계산법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세무서 코드는 세무서코드보기를 눌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 2020년 입사자만 조회됩니다.
  (재직자 전체 체크 시 이전 입사자도 조회 가능)
- 등록할 사원을 선택 후 전 직장에서 가져온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소득세, 지방 소득세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 종전 근무지가 4곳 이상인 경우 **종전근무지4**에 총 급여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합니다.

2-2.사업장변경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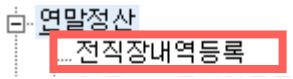

- 사업자나 위탁사가 변경 되었을 때 퇴사처리 없이 계속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해당사원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 직장내역에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단, 퇴사처리 후 새로운 사번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변경처리가 아닌 전직장 내역 등록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변경처리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① 사업자 변경 전 근무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 합니다.

② 변경 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③ 변경 전 상호명을 등록 합니다.

④ 선택에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사업장변경처리 후 연근로소득내역 등록 메뉴에서 연급여수신을 받으면 종전 근무기간 이후로 급여수신이 됩니다.

예) 종전근무기간 : 2020.01.01 – 2020.08.31-> 연근로소득내역 : 2020.09-2020.12

-흰색 : 저장을 클릭해서 반영된 상태

-분홍색 :저장 전 반영되지 않은 상태

-노란색 : 저장 후 정보를 변경(입사일 or 다른 근무기간)한 상태

3.연근로소득내역등록

- 2020년에 계산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 하는 메뉴 입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정보를 조회 합니다.
- 사원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2020년에 계산된 급여가 표기
- 전 사원을 수신하려면 연급여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 후 급여금액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내역이 없을경우 최종 월분에 총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급여수신을 다시 할 경우 수기로 입력한 금액은 초기화 되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연근로소득내역등록 -야간근로수당

	지급 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 순서	사용 여부	상여 포함	과세 대상	일수 계산	월차 계산	연말 정산	퇴직 정산	비과세 한도
	지급	월차	월차	7	☑	☐	☑	☐	☑	☑	☑	0
	지급	연차	연차	8	☑	☐	☑	☐	☑	☑	☑	0
①	지급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9	☑	☐	☑	☐	☑	☑	☑	200,000
	지급	출납수당	출납수당	10	☑	☐	☑	☑	☐	☑	☑	0

	지급 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 순서	사용 여부	상여 포함	과세 대상	일수 계산	월차 계산	연말 정산	퇴직 정산	비과세 한도
	지급	연차	연차	8	☑	☐	☑	☐	☑	☑	☑	0
②	지급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9	☑	☐	☐	☐	☑	☑	☑	0
	지급	출납수당	출납수당	10	☑	☐	☑	☑	☐	☑	☑	0
	지급	보건수당	보건수당	11	☑	☐	☑	☑	☑	☐	☐	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1,500,000	15,000	1,515,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2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3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4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5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6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7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8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09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10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11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12	1,500,000	0	1,500,000	300,000	8,920	890	9,750	50,250	0	100,000	200,000
합계	18,000,000	15,000	18,015,000	3,600,000	107,040	10,680	117,000	603,000	0	1,200,000	2,400,000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중 연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 단,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만 적용되며 관리직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인사/급여=>공통정보관리=>급여기초정보에서 항목코드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고

  ① 과세대상 V체크 + 비과세한도 입력 또는

  ② 비과세항목으로 설정 후 급여계산 된 경우에만

- 연말정산=>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야간근로에 금액이 수신 됩니다.

3.연근로소득내역등록 -야간근로수당

사번	성명
000001	홍길순
000002	원빈
000004	고령자
000031	김테스트
000111	테스투
000125	사쿠짱(경비)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2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3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4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5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6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7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8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09	1,000,000	0	1,000,000					3,500	100,000	100,000	240,000
10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1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2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합계	12,000,000	0	12,000,000	4,080,000	0	0	78,000	402,000	1,200,000	1,200,000	2,880,000

웹 페이지 메시지

야간근로는 연 24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확인

연급여수신 후 야간근로수당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사번의 성명란에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해당사번을 클릭하여 야간근로 금액을 수정 후 저장합니다.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9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0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1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2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합계	12,000,000	0	12,000,000	4,080,000	0	0	78,000	402,000	1,200,000	1,200,000	2,880,00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9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0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1	1,000,000	0	1,000,000	34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240,000
12	1,240,000	0	1,240,000	100,000	0	0	6,500	33,500	100,000	100,000	0

또한, 미화나 경비직을 제외한 관리직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원의 야간근로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u>연급여수신 시 야간근로 금액이 자동으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 수기로 입력 가능합니다.</u>

야간근로 금액 입력 시 해당 금액만큼 급여와 비과세 금액이 조정됩니다.

3.연근로소득내역등록 -야간근로수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1)] (1쪽)

관리번호	000002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	여1/부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법 인 명(상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대표자(성명)	교육용
	사업자등록번호	120-86-14222	주민등록번호	180105-
	소 재 지(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017호		
소득자	성 명	연말1	주민등록번호	790101-2222222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I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명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사업자등록번호		120-86-14222				
	근 무 기 간		2019/01/01~2019/12/31				
	감 면 기 간						
	급 여		10,080,000	0	0	0	10,080,000
	상 여		0	0	0	0	0
	인 정 상 여		0	0	0	0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0	0	0	0	0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	0	0	0	0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0	0	0	0	0
			0	0	0	0	0
	계		10,080,000	0	0	0	10,080,000
II 비과세및감면	국외근로	M0X	0	0	0	0	0
	야간근로수당	O0X	2,400,000	0	0	0	2,400,000
	출산 · 보육수당	Q0X	0	0	0	0	0
	연구보조비	H0X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80%	T11	0	0	0	0	0

연말정산작업 후 연말정산결과조회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인쇄 시 비과세 금액란에 야간근로수당이 표시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연근로소득내역등록

인사/급여
- 공통정보관리
  - 인사코드정보
  - 급여기초정보
  - 퇴직환경설정
  - 상여율등록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지급 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 순서
지급	년차	연차	11
지급	상여금	상여금	12
지급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13
공제	퇴직전환금	퇴직전환금	14
공제	고용보험	고용보험	15
공제	상조회비	상조회비	16
공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17
공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18
공제	산재보험	보험보험	19
공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20

※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합쳐진 금액 입니다.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합쳐서 나오지 않으면
인사/급여 =>공통정보관리=>급여기초정보 메뉴에서 항목명의 장기요양보험 항목 옆 항목코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선택해야 합니다.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사용방법 및 에러처리 클릭 따라하기 클릭 동영상 메뉴얼 조회 저장 삭제

검색조건 SEARCH * 년도 2020 년 * 부서 전체

사번	성명
000001	홍길동
000002	허생원
000003	김삿갓

부서	사무실	급여	48,700,000	소득세	40,000
직위	전기과장	상여	0	지방소득세	40,000
입사일	2019.01.01	급여합계	48,700,000	고용보험	318,000
퇴사일		비과세	600,000	국민연금	6,000,000
주민번호		식대	0	건강보험	3,180,000
				야간근로	400,000

※ 청소, 경비 근로자에 한하여 야간,연장,휴일수당등은 연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급여수신 >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3	0	0	0	0	0	0	0	0	0	0	0
04	0	0	0	0	0	0	0	0	0	0	0
05	0	0	0	0	0	0	0	0	0	0	0
06	0	0	0	0	0	0	0	0	0	0	0
07	0	0	0	0	0	0	0	0	0	0	0
08	0	0	0	0	0	0	0	0	0	0	0
09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11	36,700,000	0	36,700,000	400,000	20,000	20,000	159,000	1,590,000	3,000,000	0	200,000
12	12,000,000	0	12,000,000	200,000	20,000	20,000	159,000	1,590,000	3,000,000	0	200,000
합계	48,700,000	0	48,700,000	600,000	40,000	40,000	318,000	3,180,000	6,000,000	0	400,000

※ 사업장변경처리 후 연근로소득내역 메뉴에서 연급여수신을 받으면 종전 근무기간 이후 월분이 급여수신 됩니다.

예) 사업장변경처리 종전근무기간 : 2020.01.01 – 2020.10.31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수신시 2020.11~2020.12 에 대한 급여월분이 수신됩니다.

4.개인공제자료등록

- 연말정산
  - 전직장내역등록
  - 연근로소득내역등록
  - 개인공제자료등록

사번	성명
000001	홍길동
000002	허난설
000003	장영실

기본정보

입력할 항목	해당여부	공제조건 및 입력방법
과세대상급여	39,707,060원	연간 급여 총액
과세대상상여	0원	연간 상여 총액
기납부세액	1,058,300원	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 기재,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야간근로수당	0원	비과세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연 240만원 한도(경비, 미화)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자세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 주세요.

[가족사항 입력 주의사항 보기]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

초기화 › 행추가 ›

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형제자매(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위탁아동(만18세미만) 경로(만70세이상) 수급자(제한없음)

삭제	관계 코드	내외 코드	성명	주민번호	부양	인적공제								
						기본공제	세대주	종교관련 종사	부녀자	한부모	장애	경로우대	자녀	출산 입양
	본인	내국인	홍길동	601201-*******	Y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홍아들	960101-*******	N	☐	☐	☐	☐	☐	☐	☐	☐	
☐	본인직계존속	내국인	홍엄미	470101-*******	Y	☑	☐	☐	☐	☐	☐	☑	☐	

- 개인공제자료등록은 근로자의 가족사항 및 추가공제사항, 공제받을 금액 등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 연근로소득내역등록과 전직장내역등록을 완료 한 후에 개인공제자료 등록을 작업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사번을 클릭하면 연근로소득내역에서 저장한 과세대상급여, 과세대상상여,기납부세액, 야간근로수당이 나타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이 있는 사원이라면 표시되는 금액은 연근로소득내역과 전직장내역 금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금액 확인 후 아래 가족사항 과 사용금액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력할 정보가 없을 때에는 해당 사번 클릭 후 바로 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1. 부양가족 등록

① 부양가족 대상 요건 (기본공제)

관계코드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x	x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 해외 거주는 제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포함)	만20세이하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x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만20세이하 or 만60세 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만18세이하 (조건부 연장 가능)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초생활수급자	x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 부양가족 정보는 인사/급여 => 인사관리 => 인사기본정보 메뉴의 가족사항에 등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 가족사항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단의 행추가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두번 나타나는 경우
  인사/급여 => 인사관리 => 인사기본정보 메뉴의 가족사항에 본인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으니 해당 메뉴에서 삭제 후 작업하여 주세요.
- 부양가족 대상요건에 맞춰 인적 공제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부양가족 등록

② 부양가족 대상 요건 (추가공제대상)

	요건	특이사항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 • 배우자가 있는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중복불가
한부모	• 배우자가 없음 (남성, 여성 모두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있는경우	부녀자-중복불가
장애	소득세법 장애인	
경로	만 70세이상	
자녀	7세이상의 자녀	아동수당장려금 대상자 제외
출산입양	당해연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경우	손자,손녀는 대상아님

- 추가공제대상 요건에 맞게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장려금 지급으로 만 7세이상 자녀만 자녀 구분에 체크합니다.

4-2. 보험료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보험료를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본인	홍길동	1,500,000	0	1,412,310	276,91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2,000,000	0	0	0	0	0
합계		3,500,000	0	1,412,310	276,910	0	0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원	전 액
	종(현)근무지	보험료	1,738,800원	전 액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0원	전 액
	군인연금	보험료	0원	전 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험료	0원	전 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0원	전 액
	공적연금보험료 계		0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종(전)근무지	0원	전 액
		종(현)근무지	1,412,310원	전 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0원	전 액
		종(현)근무지	276,910원	전 액

그밖의 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전 가입)	납입금액	0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0원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보험료	0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험료	0원	
	연금저축계좌	보험료	0원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3,500,000원	100만원
	장애인보장성보험	보험료	0원	100만원

-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금액은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된 금액이 표기 되고 하단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금액에 표기 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지역국민연금 가입자 금액은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만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총 금액을 입력 합니다.
  하단 세액공제 보험료 칸에 금액이 표기 됩니다.
- 보장성 외 연금저축 및 연금계좌에 대한 금액은 해당 칸에 총 금액을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 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

4-3. 주택자금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세대주인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인 사원만 입력해주세요.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원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0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원	600만원 한도
				15년~29년	0원	1000만원 한도
				30년이상	0원	15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원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0원	50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원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원	1500만원 한도
				기타 대출	0원	500만원 한도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원	300만원 한도

그밖의 공제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0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1.01 이후 가입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15.01.01 이전 가입자인 경우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0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0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원	
월세액	지출액	0원	5.5천만원 이하 12% 5.5초과 / 7천만원 이하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등록 가능 하나,

세대주가 아래의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이여도 공제 가능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단, 해당주택에 실 거주를 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만 가능

주택마련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월세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4. 신용카드등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본인	홍길동	400,000	900,000	600,000	69,950	69,950	69,950	150,000	150,000	150,00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400,000	500,000	600,000	69,950	69,950	69,950	150,000	150,000	150,000	50,000	50,000	50,00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800,000	1,400,000	1,200,000	139,900	139,900	139,900	300,000	300,000	300,000	50,000	50,000	50,000

관계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도서공연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직불(선불)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외 사용액
본인	홍길동	0	0	0	0	120,000	120,000	120,00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50,000	0	0	0	120,000	120,000	120,000	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50,000	0	0	0	240,000	240,000	240,000	0	0	0	0	0	0

신용카드등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밖의 공제

항목			3월 사용액	4월~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합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제외)	신용카드 (1	800,000원	1,400,000원	1,200,000원	3,400,000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제외)	직불카드 등 (2	139,900원	139,900원	139,900원	419,700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제외)	현금영수증 (3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900,000원
	도서.공연등 (4	신용카드	50,000원	0원	0원	50,000원
		직불카드	0원	50,000원	0원	50,000원
		현금영수증	0원	0원	50,000원	50,000원
	전통시장 사용분 (5		0원	0원	0원	0원
	대중교통 이용분 (6		240,000원	240,000원	240,000원	720,000원
	계(1+2+3+4+5+6)		1,529,900원	2,129,900원	1,929,900원	5,589,700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서 공연 등 비용은 신용/직불/현금에 합하여 입력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월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 합니다.
  3월 / 4월~7월 /그외 (1월~2월,8월~12월)

  월별/항목으로 등록된 금액이 아래내역에 집계되어 표기 됩니다.

- 도서,공연등 금액은 상단에 월별로 등록 후 하단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에 구분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의료비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의료비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의료비: 의료비 입력시 실손의료보험금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			그밖의자료[의료비: 의료비 입력시 실손의료보험금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		
		의료비 일반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의료비 일반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본인	홍길동	2,500,00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1,000,00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0	0	700,000	0	0	0
합계		3,500,000	0	700,000	0	0	0

의료비의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세액공제

의료비	난임시술비(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지출액	0 원
	본인 · 65세이상자 · 장애인(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지출액	3,200,000 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지출액	1,000,000 원
	의료비 계		4,200,000 원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을 구분에 맞게 등록 합니다.
- 장애인이거나 65세이상일경우 꼭 구분에 맞게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4-6. 교육비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교육비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교육비[국세청 또는 그밖의 자료 교육비에 총금액 입력]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교육비 구분	공납금 (일반)	교복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본인	홍길동	본인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대학생	4,374,000	0	0	3,374,000	0	1,000,000	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해당없음	0	0	0	0	0	0	0
합계			4,374,000	0	0	3,374,000	0	1,000,000	0

교육비의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세액공제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 포함)		0원	전 액
	취학전아동	유치원 · 학원등	0명	0원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공납금+교복비+체험학습비	0명	0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공납금	1명	4,374,000원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0명	0원	전 액
	교육비 계			4,374,000원	

- 교육비 구분을 선택 합니다.
- 초록색 교육비 칸에 공납금 및 교육비 체험학습비 금액을 입력 하고 오른쪽 국세청자료 그밖에 자료에 금액 산출 내역에 맞게 나누어 등록 합니다.

예) 교육비총금액이 4,374,000원 이면 총금액을 초록색칸에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표기된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입력 (3,374,000원)
그 외 별도 영수증 금액을 그밖의 자료에 입력 (1,000,000원)

4-7. 기부금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기부금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기부금	기부금
본인	홍길동	0	3,130,00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0	0
본인직계존속	홍엄미	0	0
합계		0	3,130,000

기부금의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년도 기부금	0원
	법정기부금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원
		당해년도 기부금	0원
		2019년 이월분	0원
		2018년 이월분	0원
		2017년 이월분	0원
		2016년 이월분	0원
		2015년 이월분	0원
		2014년 이월분	0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해년도 기부금	0원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원
		당해년도 기부금	3,130,000원
		2019년 이월분	0원
		2018년 이월분	0원
		2017년 이월분	14,098원
		2016년 이월분	0원
		2015년 이월분	0원
		2014년 이월분	0원
	지정기부금(종교단체)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원
		당해년도 기부금	0원
		2019년 이월분	0원
		2018년 이월분	0원
		2017년 이월분	0원
		2016년 이월분	0원
		2015년 이월분	0원
		2014년 이월분	0원
		기부금공제액 계	3,130,000원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당해년도 기부금 총금액을 입력 합니다.
- 상단에 입력한 기부금을 하단내역에서 기부금 종류에 맞게 등록 합니다.
-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이월된 기부금 년도 및 종류에 맞게 등록 합니다.

4-8. 기타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그밖의 공제

투자조합 출자공제	2018년 출자 · 투자분	일반	출자 · 투자금액	0원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원
	2019년 출자 · 투자분	일반	출자 · 투자금액	0원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원
	2020년 출자 · 투자분	일반	출자 · 투자금액	0원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원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0원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0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0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면기간	.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0%	0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70%	0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0원

- 해당 내역에 포함되는 사원은 금액을 입력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집합투자저축 소득공제	처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취업제 소득세 감면	(감면율)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대 상 :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대상업종: 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연말정산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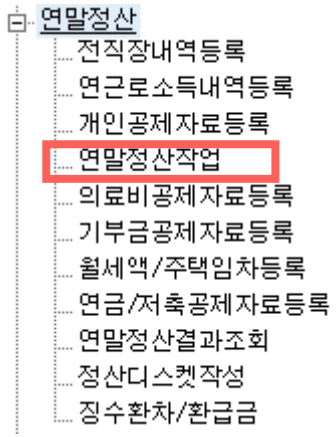

- 연말정산작업은 저장해 놓은 전직장내역, 연근로소득내역, 개인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작업을 하는 메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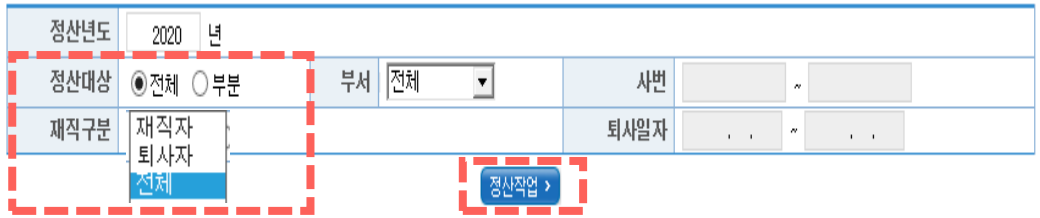

-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할 경우 정산대상과 재직구분을 전체로 놓고 정산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 작업을 하고 싶다면 재직구분을 재직자로 놓거나 또는 퇴사자로할 경우 퇴사일자를 같이 입력합니다.
- 특정 직원만 정산하고자 할 경우 정산대상을 부분으로 선택한 후 오른쪽에 해당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고 정산작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원만 연말정산 작업이 됩니다.

6.의료비공제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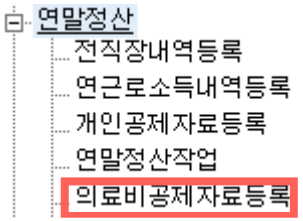

- 의료비공제등록은 조회되는 직원만 등록 합니다.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은 직원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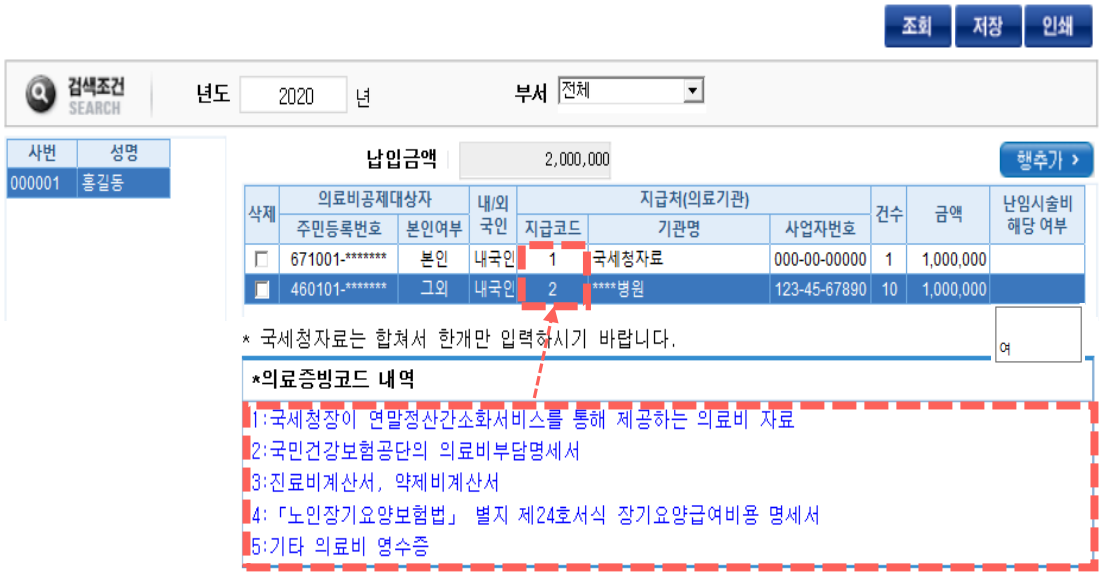

- 입력하려는 직원을 선택한 후 오른쪽 화면에서 **행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의료증빙 자료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건건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표로 한 개의 상호정보 입력 후
  건수와 총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는 (-)를 빼고 입력합니다.
  - 사업자번호와 기관명은 [*]를 포함하여 입력하여도 됩니다.
  - 지급코드는 *의료증빙코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7.기부금공제자료등록

- 연말정산
  - 전직장내역등록
  - 연근로소득내역등록
  - 개인공제자료등록
  - 연말정산작업
  - 의료비공제자료등록
  - 기부금공제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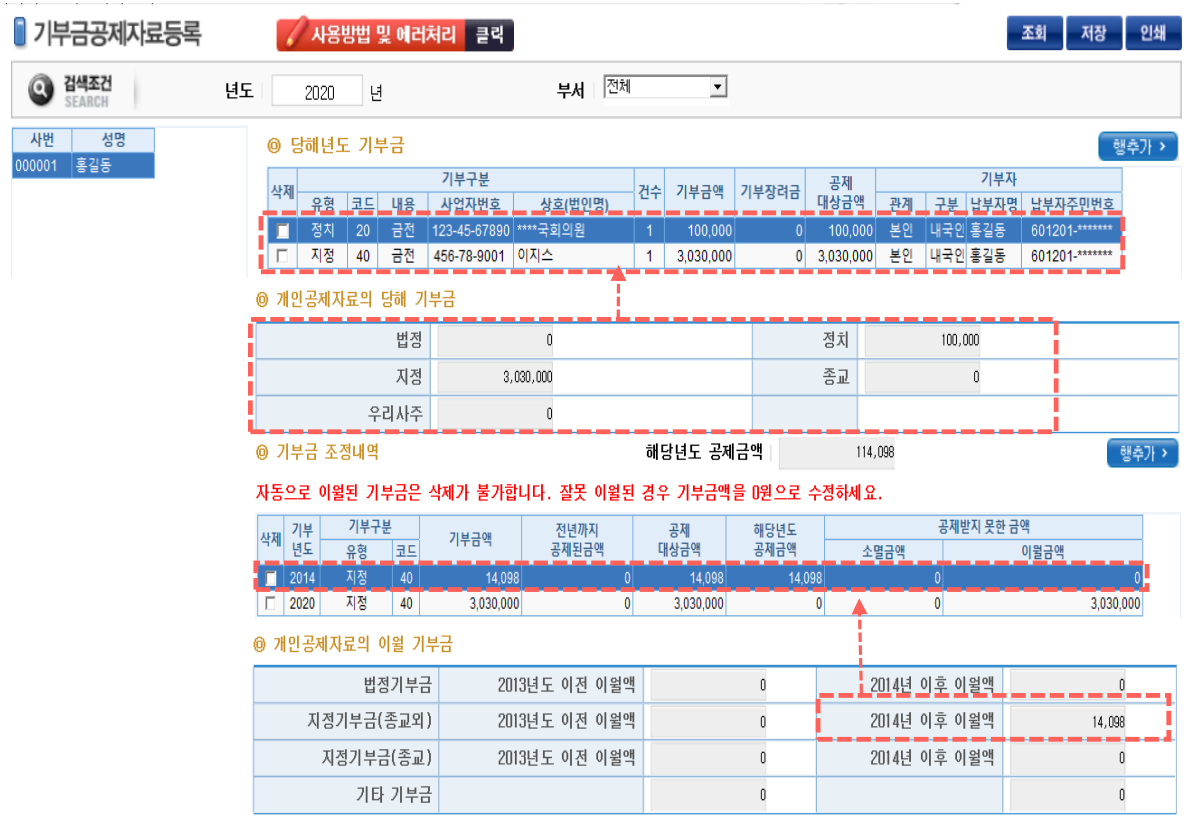

- 기부금공제자료등록은 조회되는 직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 개인공제자료등록에서 기부금 항목에 금액을 입력한 직원만 해당 됩니다.

- 직원을 선택한 후 행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기부 유형을 선택하고 당해년도 기부금 내역을 등록 합니다.

  하단 개인공제자료의 당해 기부금 내역과 동일하게 등록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는 (-)를 빼고 입력합니다.
  - 상호(법인명)은 [*]를 제외한 상호(법인명)만 입력합니다.

- XPERP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자료등록을 입력 했을 때 기부금 금액 중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기부금 조정내역 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확인 후 저장 합니다.
- 이월금액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기부금 조정내역 오른쪽 행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 합니다.

8.월세액/주택임차등록

① 직원을 선택한 후 오른쪽 화면에서 행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② 상단의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참고하여 월세액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는 (-)를 빼고 입력합니다)

③ 입력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당해 연도 월세 세액 공제금액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당해 연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됨

※ a 금전소비대차 :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며 작성하는 계약 문서

※ b 임대차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9.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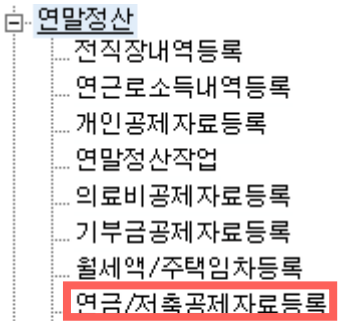

-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은 조회되는 직원만 등록 합니다.

- 직원을 선택한 후 오른쪽 화면에서 행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 세액 공제금액 적고, 공제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입력 하지않습니다.)
  -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를 빼고 입력합니다.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 과학기술을 퇴직연금 구분을 선택 후 입력
  연금저축계좌 – 개인연금, 연금저축을 연금저축 구분을 선택 후 입력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구분을 선택 후 입력

10.연말정산결과조회

- 연말정산
  - 전직장내역등록
  - 연근로소득내역등록
  - 개인공제자료등록
  - 연말정산작업
  - 의료비공제자료등록
  - 기부금공제자료등록
  - 월세액/주택임차등록
  -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 연말정산결과조회

연말정산결과조회 사용방법 및 에러처리 클릭

조회 저장 인쇄

검색조건 SEARCH

정산년도 2020 년 | 정산대상 ◉전체 ○부분 | 사번 -

재직구분 전체 | 부서 전체 | 퇴직일자 . . - . .

출력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구분 전체 | 작업일자 2021.01.13

☐신고자구분 ☐(영수증/징수부)집계표 발행자보관용

삭제	사번	사원명	과세대상	근로소득	인적공제	연금보험	특별공제	기타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납부환급	신고구분
☐	000001	홍길동	40,707,060	11,356,059	4,000,000	1,738,800	1,689,220	0	21,922,981	2,208,447	2,118,784	98,629	-112,900	신고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1)] <2020.12.31> (1쪽)

관리번호 00000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외국법인소속파견자여부	여1/부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거주근로1 비거주사업2		

징수의무자	법 인 명(상호)	연말정산확인	대표자(성명)	화인중
	사업자등록번호	107-81-91984	주민등록번호	111111-08086
	소 재 지(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		
소득자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01201-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4 10017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 무 처 명		연말정산확인				
	사업자등록번호		107-81-91984				
	근 무 기 간		2020/05/02~2020/12/31				
	감 면 기 간						
	급 여		39,707,060	0	0	0	39,707,060
	상 여		1,000,000	0	0	0	1,000,000
	인 정 상 여		0	0	0	0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0	0	0	0	0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	0	0	0	0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0	0	0	0	0
			0	0	0	0	0
	계		40,707,060	0	0	0	40,707,060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국외근로	H0				0	0
	야간근로수당	00				0	0
	출산 · 보육수당	00				0	0
	연구보조비	H0				0	0
						0	0
						0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50%	T1				0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70%	T1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	T1				0	0
	비과세소득 계					0	0
	감면소득 계		0	0	0	0	0

식대금액은
비과세소득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III 세액명세	결 정 세 액			89,663	8,966	0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	0	0	0
			사업자 —	0	0	0
				0	0	0
		주(현)근무지		105,770	105,770	0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16,100	-96,800	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1 년 01 월 13 일

징수(보고의무자) 연말정산확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징수의무자	1.사업자등록번호	107-81-91984	2.법인등록번호	111111-08086
	3.법 인 명	연말정산확인	4.대 표 자	화인중
	5.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	6.전 화 번 호	010-1234-5678

제 출 내 용

7.귀속연도	8.제출년월일	9.소득종류	10.매수	11.건수	12.소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13.소득세	14.법인세	15.농특세	17.지방소득세
2020	2021년01월13일	연말정산	1	1	40,707,060	89,663			8,966

소득세 금액은
결정세액입니다.

내용을 제출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작성요령

1.귀속연도별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갑종,을종),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매수: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건수: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소득(수입)금액: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지급액과 동일)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원천징수세액:근로(갑종,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을 기재합니다.

-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료제출집계표 등의 양식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10.연말정산결과조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0
		고용보험료				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거주자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15년~29년		0
				30년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0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부금(이월분)					0
	계					0
차감소득금액						11,212,693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투자조합출자 등					0
	신용카드 등 사용액					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출산,입양자	(1명)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계		0
	표준세액공제		130,000
납세조합공제			0
주택차입금			0
외국납부			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계			500,018
결정세액			172,743

- 국세청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XPERP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경우와 표준세액 공제로 받는 경우 결정세액이 유리한쪽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금액이 모두 0원일 경우
  - ☞ 표준세액공제에 최대 13만원으로 표기

11.정산디스켓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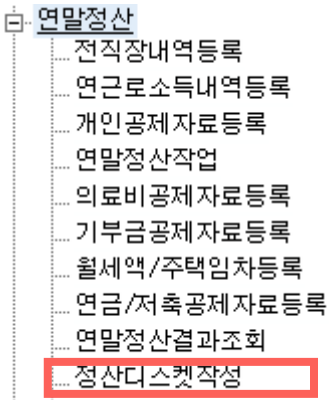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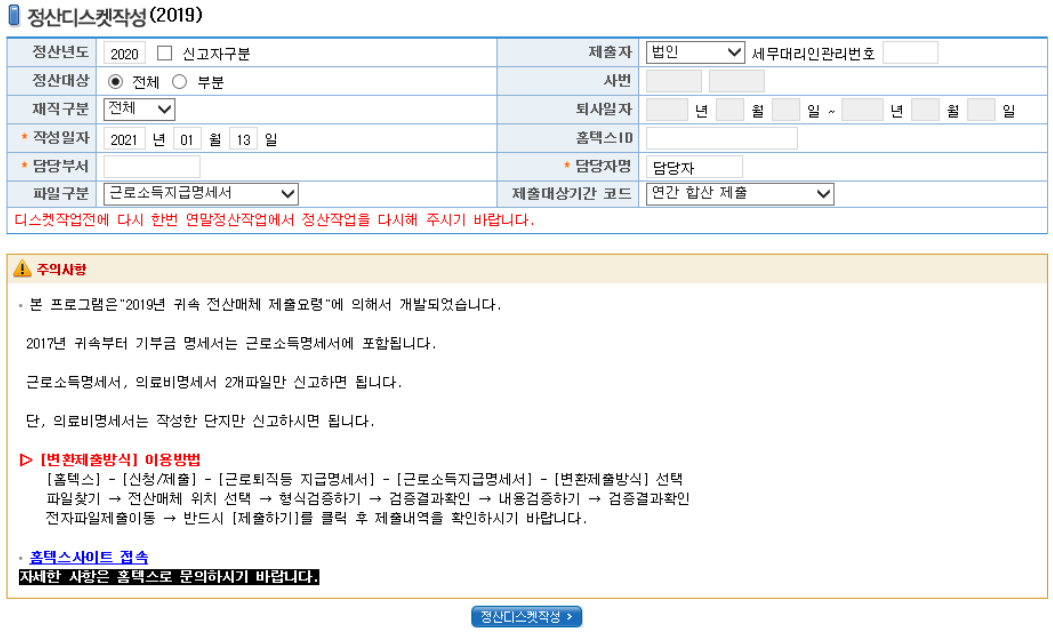

- 연말정산결과조회에서 확인을 한 후 홈텍스 신고를 위한 정산디스켓 작성을 합니다.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구분 신고대상자 구분을 선택 합니다.
  전체(재직자+퇴사자) / 재직 (재직자) / 퇴직자 (퇴직자)

-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의료비 명세서를 선택 후 정산디스켓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담당자명을 꼭 등록하여 주세요.

11.정산디스켓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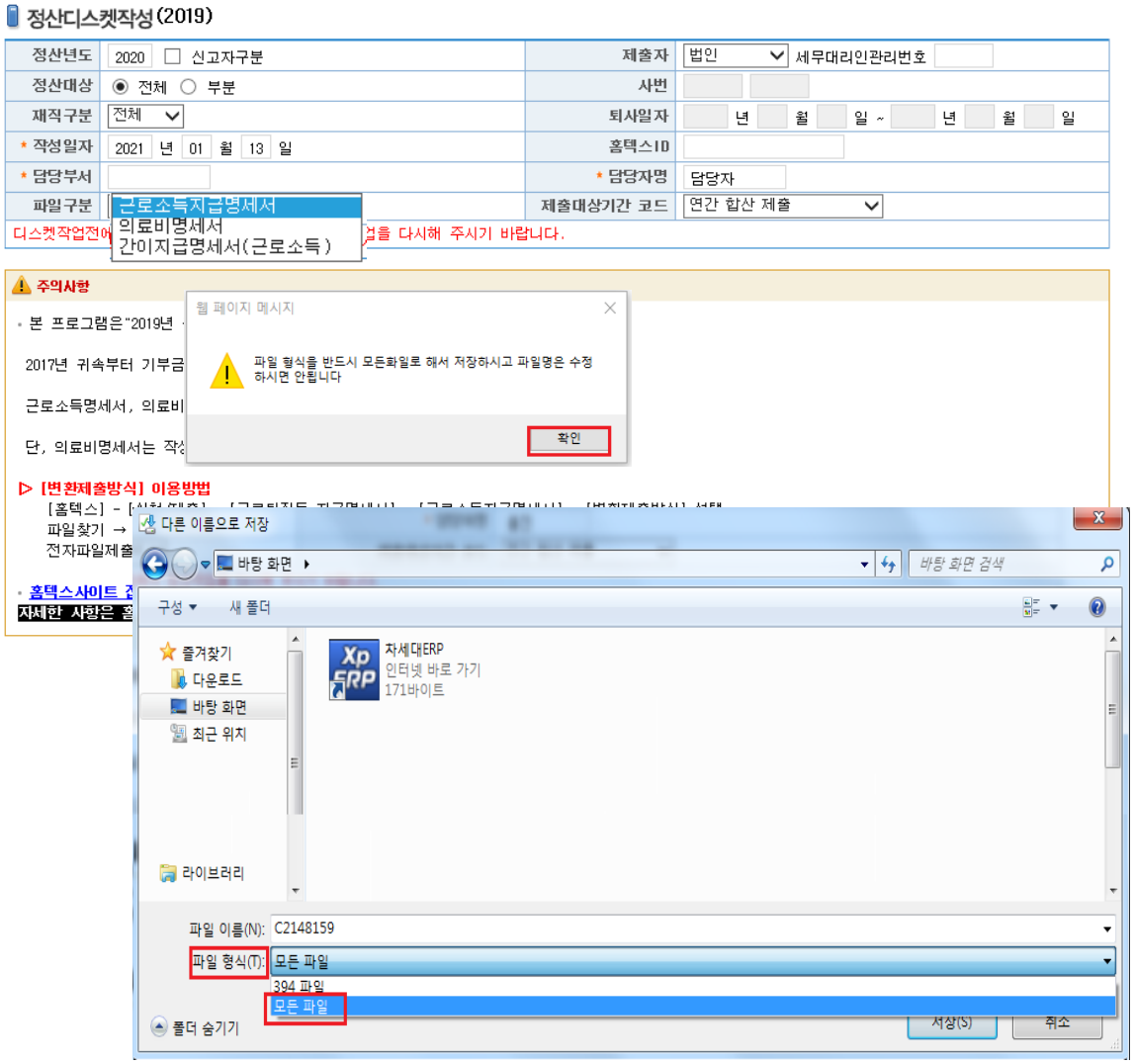

정산디스켓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른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여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선택 후 저장합니다.

- 의료비내역이 있는 경우 파일구분에서 의료비명세서를 선택 후 디스켓작성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징수환차/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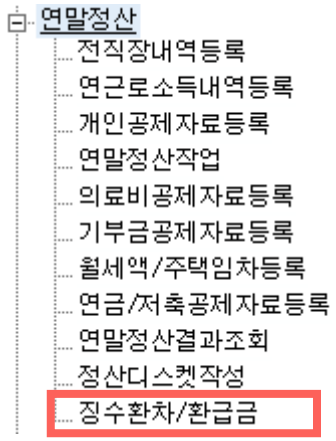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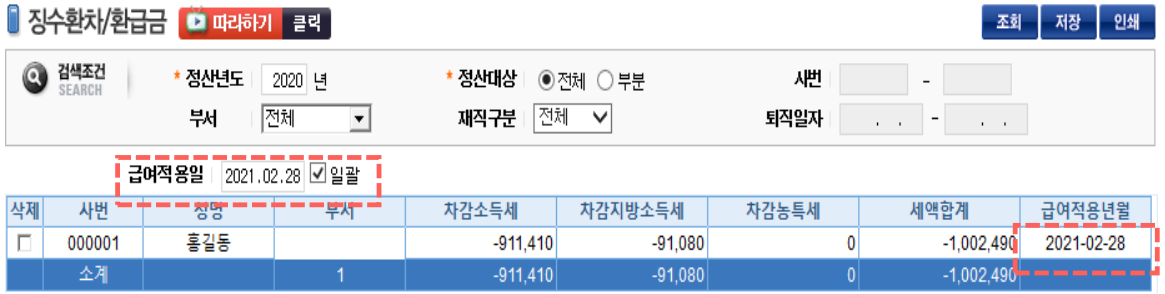

-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메뉴입니다.
- **급여계산 전 해당메뉴에서 급여적용년월을 등록하여야 급여에 반영 됩니다.**
- 정산 년도 2020년으로 조회 합니다.
- 급여적용일 에 급여지급일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급여 적용 년월에 급여지급일이 나타납니다.
- 급여 적용 년월로 급여계산 작업을 하면 환급소득세/환급지방소득세금액이 급여에 반영됩니다.

※ 급여계산 후 명세서를 출력하면 적용된 징수환차/환급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 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500만원 이하 / 70% 500만~1,500만원 이하 / 40% 1,500만~4,500만원 이하 / 15% 4,500만~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좌 동) ○ 공제 한도 : 2,0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소득령 §38)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5) ISA계좌 만기시 개인 ·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신 설〉	○ 추가 납입 방법 :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소득령 §17)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 급료 ·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좌 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규칙 §93)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세표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24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98%*42%)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율 인상
ㅇ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ㅇ 2% → 5%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소득칙 §6의5)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ㅇ 항공수당	ㅇ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ㅇ 함정근무수당	ㅇ 함정근무수당 (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ㅇ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ㅇ (좌 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개 정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기관 추가
ㅇ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좌 동)
ㅇ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ㅇ 우정사업본부 추가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ㅇ (좌 동)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18의3)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 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추 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대상) 청년 · 60세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 · 출산 ·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좌 동) · (좌 동)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적용기한) 2021.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86의4)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 ·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신 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신 설〉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종 전	개 정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도서·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좌 동)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조특법 §16)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업종 확대
○ (대상) 청년 · 60세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좌 동)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적용기한) 2021.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 · 미술관 : 7,500만원 - 신문구독료 : (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20.3.23.)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 · 대상에 따라 30~80%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 · 대중교통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종 전(20.3.23.)	개 정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좌 동)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100만원

종 전(20.3.23.)	개 정
○ (적용기한) '22.12.31.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개정이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ㅇ (좌 동)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ㅇ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ㅇ (감면율)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적용시기〉 '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